

「교내학술연구비 세칙」 신규조문대비표

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80/compare?from=452&to=45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6:3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)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,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	제6조(교내정책연구과제 위촉) 교수연구위원회는 교원에게 교내정책연구과제를 위촉할 수 있고, 그에 대한 특별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106-02-29>
제8조(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) ①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. ②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.	제8조(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) ① 대학 논문집에 게재하는 논문의 작성지침 및 심사는 교수연구위원회의 별도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16-02-29> ② 연구소의 논문편집은 각 연구소의 방침에 따른다.
제9조(연구결과물의 심사) 교수연구진흥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. 1.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. 2.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.(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.)	제9조(연구결과물의 심사)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. <개정 2016-02-29> 1.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. 2.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.(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.) <개정 2016-02-2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내학술연구비 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8조제1항 중 "교수연구진흥위원회"를 각각 "교수연구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따른다."를 "따른다.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9조(연구결과물의 심사) 교수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한다.
1. 결과물의 재심요청시 모든 결과물에 대해 공히 1회에 한해 재심할 수 있다.
 2. 재심은 동일전공 외부전문가 3인의 심의로 한다.(외부전문가라 함은 교수연구위원회 위원 외의 교내 1인과 교외 2인을 기준으로 한다.)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